



KIEP 기초자료
20-2

2020년 1월 13일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UNCTAD 자료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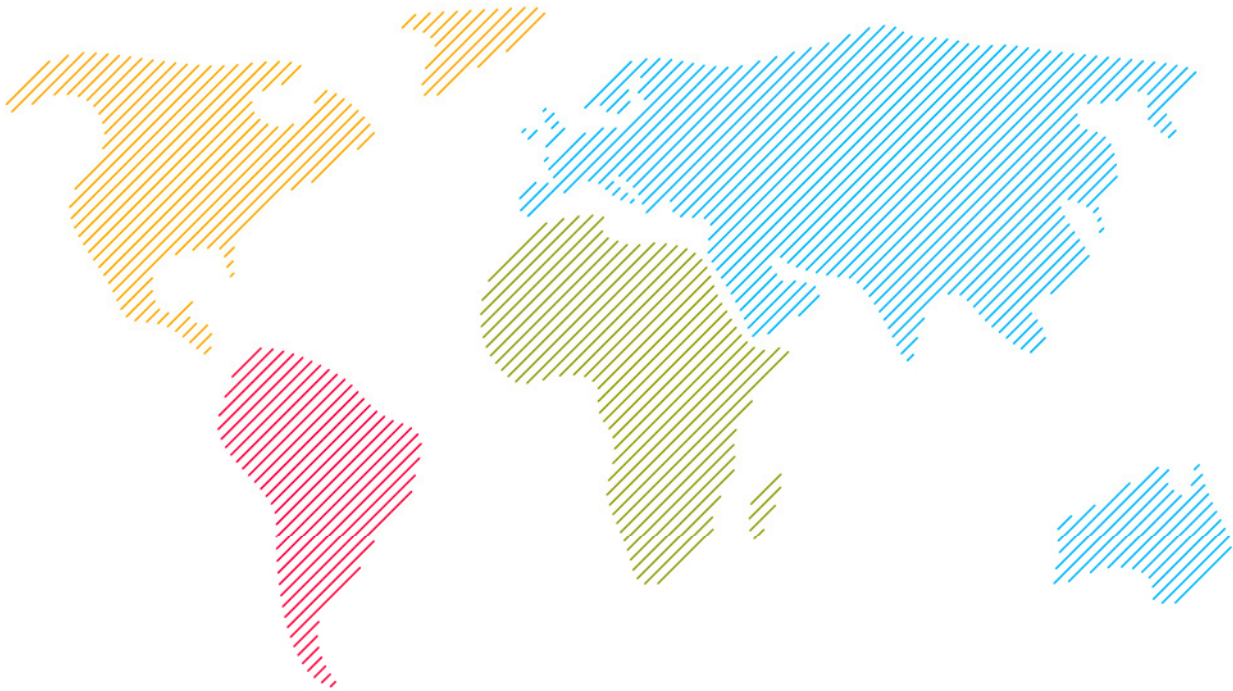
김종덕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jongduk.kim@kiep.go.kr, 044-414-1181)
정민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044-414-1052)
김지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jihyeon@kiep.go.kr, 044-414-1031)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UNCTAD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 ▶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가 UNCTAD TRAINS 웹사이트(<https://trains.unctad.org/>)를 통해 2019년 정식 등록 및 공개됨.
 -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각국의 법령에 기초한 비관세조치들을 구체적인 분류 및 일원화된 수집 방법하에서 구축한 자료로, 국가간 정량적 비교 및 계량적 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UNCTAD 자료는 비관세조치를 16가지 대분류와 약 200여 개의 세부분류로 구분하며 비관세조치 유형, 대상 국가, 대상 품목, 법령 정보, 시행 목적, 소관부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
- ▶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총 1,930건으로, 세번(tariff line) 기준 11,483개 품목(93.8%)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관세조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상기술장벽(TBT) 비중이 36.6%와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수출관련조치(15.9%)와 가격통제조치(3.7%)를 제외하면 다른 유형들의 비중은 미미한 편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품목이 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 품목에 대해서도 3건 이상의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은 다른 RCEP 참여국과 비교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비관세조치 유형별로는 TBT, 가격통제조치 그리고 품목군별로는 농산물, 플라스틱·고무, 기계·전자 등에서 높음.
 - 타 RCEP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 수준은 TBT의 경우 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15개)에서, 가격통제조치의 경우 광물, 신발을 제외한 14개 품목군에서 RCEP 평균보다 높고, 반면 수량제한조치는 4개 품목군(농산물, 가죽)에 대해서만 한국이 높음.
 -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광물(품목군)과 수량제한조치(유형)를 제외하고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도국(동남아 국가) 및 선진국(일본) 모두와 유사한 특징을 보임.
- ▶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여러 방면의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는 국내적 규제와 관련된 연구를 심화시키고 국제적 정보 공유를 확대하면서 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비관세조치는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동시에 무역 또는 공공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국가간 비교를 통해 보다 적합한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이나, 국가간 정량적 수치를 비교할 시에는 각국의 법·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차 례

1.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의 개요 및 구성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3. RCEP 참여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가. RCEP 참여국의 비관세조치 유형별 비교

나. 한국과 RCEP 참여국의 품목군별 비관세조치 비교

4. 요약 및 시사점

부록.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와 한계점과 범위비율 계산 방법

참고문헌

1.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의 개요 및 구성

■ 2019년 UNCTAD TRAINS 웹사이트¹⁾를 통해 한국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가 정식 등록 및 공개됨.

-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 MAST(Multi-Agency Support Team)가 조직된 이후 UNCTAD의 주도하에 수집·구축된 자료 체계를 의미하며, 2020년 현재 한국을 포함해 91개국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 한국 자료에 대한 구축 작업은 2016년 UNCTAD와 ERIA가 공동으로 추진한 'RCEP 회원국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여하면서 일본, 뉴질랜드, ASEAN 등과 함께 이루어짐.
- UNCTAD의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법령에 기초한 비관세조치들을 구체적인 분류 및 일원화된 수집 방법하에서 국가간 정량적 비교 및 계량적 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는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의 상위 개념으로, 상품의 교역량 혹은 가격을 변화시켜 국제무역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세를 제외한 정책적 조치를 의미함.²⁾

-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관세조치는 교역량을 감소시키거나 가격을 증가시킴으로써 관세를 대신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식되는 경향이 큼.
- UNCTAD의 정의상 비관세조치는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되어 명시된 투명성(transparency)을 가진 조치이자,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공식적인(official) 조치라는 점에서도 비관세장벽과 차이가 있음.
 - 일례로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여겨지는 무능력, 부정부패, 상관행(商慣行) 등과 달리, 비관세조치는 법령이나 규칙 등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적인 제도적 조치들을 의미함.
 - 다만 비관세조치에는 기업 또는 민간 부문에 의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경우도 실질적인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관세조치로 간주하기 어려움.

■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는 UNCTAD-MAST 분류체계에 따라 비관세조치의 유형을 16가지 대분류(영문자 코드)와 약 200개의 세부분류(숫자 코드)로 구분함.

- 현재까지 수집 및 공개된 자료는 SPS(A), TBT(B) 등 기술적 조치와 선적전검사·통관절차(C), 수량제한조치(E), 가격통제조치(F) 등 무역에 직접적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음.
- 금융조치(G), 경쟁조치(H), 투자조치(I) 등에 대한 분류체계는 상당 부분 갖추어졌으나 아직 실질적인 자료 구축은 미진한 상황이며, 이 외에 보조금(L), 지식재산권(N), 원산지규정(O), 수출관련조치(P) 등은 구체적인 분류체계가 완성되지 않음.

1) <https://trains.unctad.org/>

2) UNCTAD(2014)

표 1. UNCTAD-MAST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구분		영문자 코드	비관세조치 유형
수입 관련 조치	기술적 조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B	무역상 기술장벽(TBT)
		C	선적전검사와 기타 통관절차
	비기술적 조치	D	무역보호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E	수량제한조치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부가요금 포함)
		G	금융조치
		H	경쟁 관련 조치
		I	무역 관련 투자조치
		J	유통제한
		K	판매 후 서비스 제한
		L	보조금(수출보조금 제외)
		M	정부조달 제한
		N	지식재산권
		O	원산지규정
수출관련조치		P	수출 관련 조치

주: 음영으로 표시된 비관세조치 유형은 현재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상에서 자료 이용이 제한적인 항목임.

자료: UNCTAD(2013), p. 3, 재인용: 조문희 외(2017), p. 39

■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비관세조치는 동식물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반덤핑조치(Anti-dumping) 등이 있으나, 비관세조치의 범위는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SPS는 인간의 보건과 동식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물질 사용 제한, 식품 안전, 질병 및 해충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하며, TBT는 목적 자체는 SPS와 유사하나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즉 SPS 범주에서 다루지 않는) 무역과 관련된 기술규정을 의미함.
- 반덤핑조치는 외국의 불공정한 행위(덤핑)에 의해 자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를 의미하며, 상계관세 역시 불공정 행위(보조금)에 대응하는 조치임.
- 이 외에 선적전검사, 세이프가드, 수량제한조치, 가격통제조치 등 역시 비관세조치에 속하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는 금융상 제한이나,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등도 비관세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는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식별된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조치 유형, 대상 국가, 대상 품목, 법령 정보, 시행 목적, 정부 소관부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비관세조치 대상 품목에 대한 정보를 각국의 세번(HS코드) 단위까지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실제 교역 자료와 연계하여 여러 측면의 통계적·실증적 방법론을 활용한 영향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임.
- 이외에도 비관세조치의 법령 조항 내용, 국내 적용 여부, 법령 시행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여러 방면의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음.

2.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고된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총 1,930건으로, 이 조치들은 29개 정부 소관부처와 427개 법령·규칙(regulations)으로부터 식별되었고, 한국의 2015년 세번(HS코드 10단위) 기준 11,483개(93.8%) 품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2. 한국의 비관세조치 자료 개요

개요		수(비중)
1	비관세조치 관련 법령/규칙 문건(regulations)	427
2	비관세조치 건수(WTO I-TIP 데이터베이스 기준)	1,507
3	비관세조치 건수(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 기준)	1,930
4	비관세조치 대상 품목(2015년 기준 HS 10단위; 세번)	11,483(93.8%)
5	비관세조치 정부 소관부처	29

자료: UNCTAD TRAINS, <https://trains.unctad.org/>(검색일: 2019. 12. 10); WTO I-TIP Goods,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검색일: 2019. 12. 10);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작업 파일(NTMs_DataEntry_Korea)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국 비관세조치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SPS(A)와 TBT(B) 비중이 36.6%와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수출관련조치(P) 15.9%, 가격통제조치(F) 3.7%를 제외하면 다른 유형들의 비중은 미미함.

- TBT는 총 건수의 93%가 모든 국가로부터의(대세계)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SPS는 74.7%가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포괄적 혹은 선별적인 두 비관세조치의 특성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비관세조치 대상 품목 비중은 SPS가 전체 세번의 30.5%에 불과한 반면, TBT는 91.1%에 달해 TBT가 SPS보다 여러 품목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가격통제조치의 경우도 건수는 71건에 불과하나 대상 품목 비중은 69.8%에 달해,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표 3. 한국의 비관세조치 유형별 현황

유형 코드	비관세조치 유형	건수	비중	대세계 조치 건수	특정국 조치 건수	대상 품목 수(세번)	대상 품목 비중(%)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707	36.6	179	528	3,738	30.5
B	무역상기술장벽(TBT)	809	41.9	751	58	11,152	91.1
C	선적전검사 및 기타 통관절차	27	1.4	22	5	4,595	37.5
E	수량제한조치	8	0.4	7	1	631	5.2
F	가격통제조치	71	3.7	71	0	8,552	69.8
G	금융조치	1	0.1	1	0	16	0.1
P	수출관련조치	307	15.9	148	159	10,969	89.6
	전체	1,930	100	1,179	751	12,244	100

자료: UNCTAD TRAINS, <https://trains.unctad.org/>(검색일: 2019. 12. 10);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작업 파일(NTMs_DataEntry_Korea)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비관세조치 세부 유형별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TBT의 상품 품질·기능 요건(B7)과 라벨링(B31), 그리고 SPS의 인증(A83)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TBT 및 SPS 관련 조치가 모두 상위에 속함.

- 대상 품목 비중은 TBT에 속하는 B7과 B31이 각각 46.2%와 70.3%인 반면, SPS에 속하는 A83의 비중은 6.6%에 불과해 특정 국가 및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SPS의 선별적인 특징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줌.
- 한편 가격통제조치에 속하는 수입면허 수수료(F65)와 세관 조사·절차·서비스 수수료(F61)의 경우 건수는 각각 5건, 26건에 불과하나, 대상 품목 비중은 45.3%, 41.4%에 달하면서 다수의 품목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4. 한국의 주요 비관세조치 세부 유형 현황

순위	세부 유형 코드	비관세조치 세부 유형(원문)	건수	대상 품목 비중(%)
1	B7	상품 품질·기능 요건(Product quality or performance requirement)	154	46.2
2	B31	라벨링(Labelling requirements)	135	70.3
3	A83	인증(Certification requirement)	89	6.6
4	B82	검사(Testing requirement)	84	44.2
5	A42	생산 과정상 위생(Hygienic practices during production)	70	16.3
6	A64	보관·운송 조건(Storage and transport conditions)	53	25.7
7	A86	검역(Quarantine requirement)	53	12.0
8	A62	동물 사육·포획 공정(Animal raising or catching processes)	47	3.2
9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Traceability requirements, n.e.s.)	44	51.3
10	B14	TBT 승인(Authorization requirement for TBT reasons)	40	56.0

주: 수출관련조치(P)는 세부 유형 분류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건수 기준 상위 10개 집계에서 제외함.

자료: UNCTAD(2013); UNCTAD TRAINS, <https://trains.unctad.org/>(검색일: 2019. 12. 10);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작업 파일(NTMs_DataEntry_Korea)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소관부처별 한국의 비관세조치 건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740건으로 전체 건수의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산업, 식품, 환경, 수산물 등과 관련된 소관부처가 많은 비관세조치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는 SPS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비관세조치가 특정 국가 혹은 품목만을 대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225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무역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법령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수 자체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식품, 의약품, 환경 등 관련 소관부처 역시 한국의 주요 비관세조치 기관이며 또한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도 상위에 속하고 있어, 한국이 어느 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표 5. 한국의 소관부처별 비관세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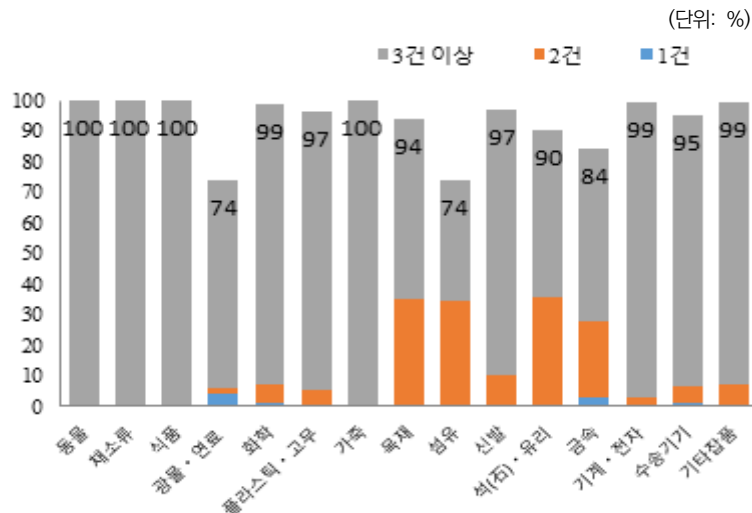
순위	소관부처	비관세조치 건수	비중(%)
1	농림축산식품부	740	38.3
2	산업통상자원부	225	11.7
3	식품의약품안전처	207	10.7
4	환경부	204	10.6
5	국토교통부	94	4.9
6	해양수산부	83	4.3
7	농림축산검역본부	71	3.7
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5	3.4
9	원자력안전위원회	46	2.4
10	보건복지부	41	2.1
	기타	166	8.6

자료: UNCTAD TRAINS, <https://trains.unctad.org/>(검색일: 2019. 12. 10);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작업 파일(NTMs_DataEntry_Korea)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품목군별로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품목들이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품목이 여러 건의 조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전체 품목(12,244개 세번) 중 3건 이상의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는 품목은 10,012개(81.8%)로, 1건(0.7%) 및 2건(11.3%)의 비관세조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품목 수와 큰 격차를 보이며,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의 비중은 6.2%에 불과함.
- 각 품목군별로 90% 이상의 품목들에 대해 비관세조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광물·연료와 섬유는 그 비중이 73.7%와 74.0%로 비교적 낮은 편임.
- 품목별 비관세조치 건수는 3건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나 목재, 섬유, 석(石)·유리, 금속에서는 2건 이하의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는 품목 비중이 35%가량으로 비교적 높음.

그림 1. 한국의 품목군별 비관세조치 대상 품목 비중



자료: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작업 파일(NTMs_DataEntry_Korea)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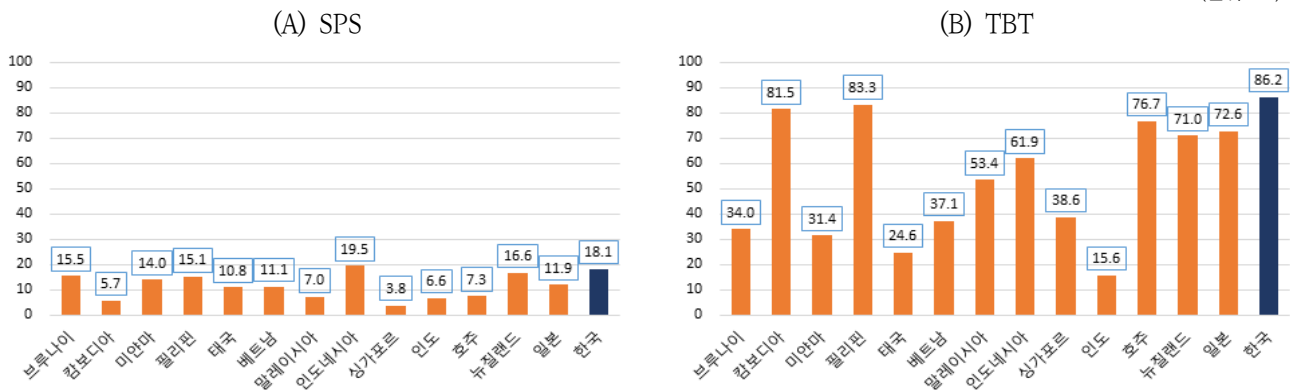
3. RCEP 참여국의 비관세조치 현황³⁾

가. RCEP 참여국의 비관세조치 유형별 비교

- 한국을 포함한 14개 RCEP 참여국들이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범위비율⁴⁾로 계산한 결과, 5개 비관세조치 유형(A, B, C, E, F)에 대한 단순평균 기준으로 필리핀(44.1%)이 가장 높고, 이어서 한국(39.6%), 일본(33.7%), 인도네시아(29.7%) 순으로 나타남.
- 비관세조치 유형별 한국의 범위비율(coverage ratio)은 TBT(86.2%)와 가격통제조치(76.9%)가 높고, SPS(18.1%), 선적전검사·통관절차(13.8%), 수량제한조치(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SPS] 주로 농산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상 SPS의 범위비율 자체는 크지 않으나, 인도네시아(19.5%), 한국(18.1%), 뉴질랜드(16.6%)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TBT] 한국의 범위비율이 86.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83.3%), 캄보디아(81.5%), 그리고 선진국인 호주(76.7%), 일본(72.6%) 등이 높음.
 - [선적전검사·통관절차] 필리핀(51.8%), 인도네시아(44.4%), 일본(25.6%), 싱가포르(24.1%), 한국(13.8%) 순으로 대부분 국가가 높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수량제한조치] 미얀마(55.6%), 필리핀(49.3%), 싱가포르(24.1%), 인도네시아(21.1%)가 비교적 높은 반면, 한국(2.9%)을 비롯한 여타 개도국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들은 3% 이하로 낮은 수준임.
 - [가격통제조치] 한국이 76.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일본(56.8%), 싱가포르(35.0%), 호주(32.0%) 순으로,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며, 개도국 중에는 브루나이(36.0%)와 필리핀(21.0%)이 비교적 높음.

그림 2. RCEP 참여국의 비관세조치 범위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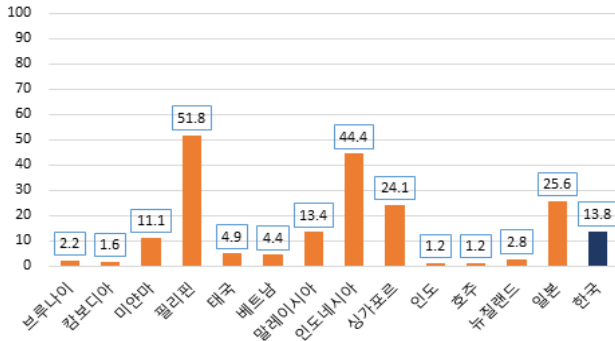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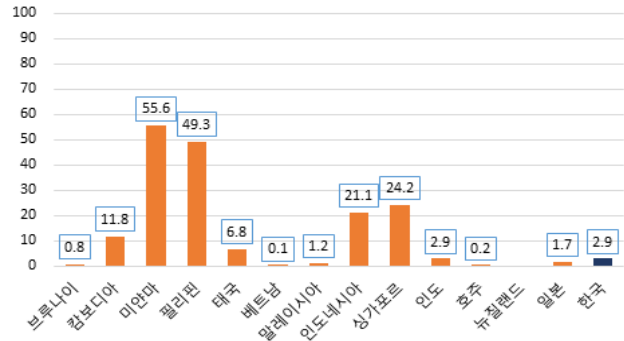
3) RCEP 참여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비교는 WITS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13개 국가의 범위비율(coverage ratio) 자료,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저자가 직접 계산한 한국의 범위비율을 이용하며, WITS에서 제공하지 않는 중국, 라오스는 제외함. 또한 인도의 경우 불완전한 자료임을 고려하여 해당 수치에 대해 본문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나, 본문의 도표 및 RCEP 참여국 평균값 도출에는 포함함.

4) 범위비율(coverage ratio)은 수입에서 비관세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함. 상세 내용은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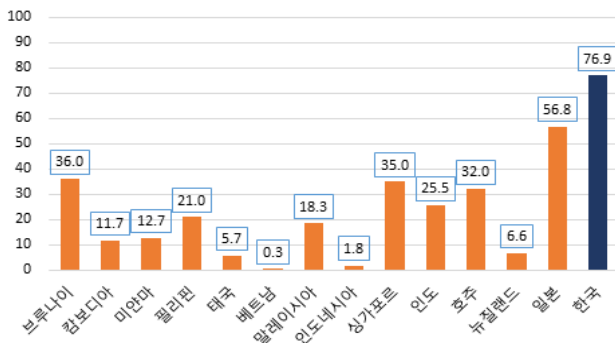
(C) 선적전검사·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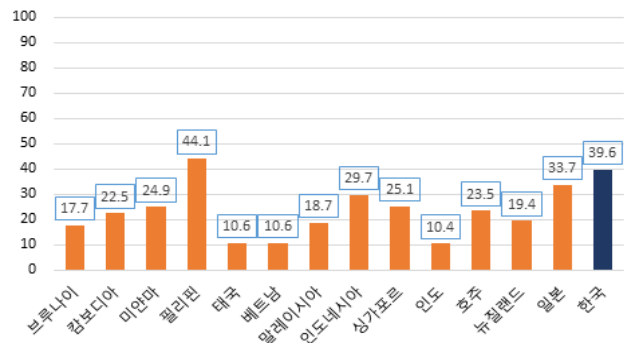
(E) 수량제한조치



(F) 가격통제조치



5개 유형(A, B, C, E, F) 평균



자료: WITS, <http://wits.worldbank.org/> (검색일: 2019. 12.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종합하면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은 다른 13개 RCEP 참여국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TBT와 가격통제 조치의 범위비율은 RCEP 국가 중 가장 높고, SPS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 한국의 가격통제조치(76.9%)는 2위인 일본(56.8%)이나 RCEP 13개국 평균(20.3%)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데, 이는 앞서 살펴본 비관세조치 세부 유형인 F65와 F61 등이 다수의 품목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반면 한국의 선적전검사·통관절차(13.8%)는 RCEP 평균(14.5%)보다 소폭 낮았으며, 수량제한조치(2.9%)는 RCEP 평균(13.5%)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나. 한국과 RCEP 참여국의 품목군별 비관세조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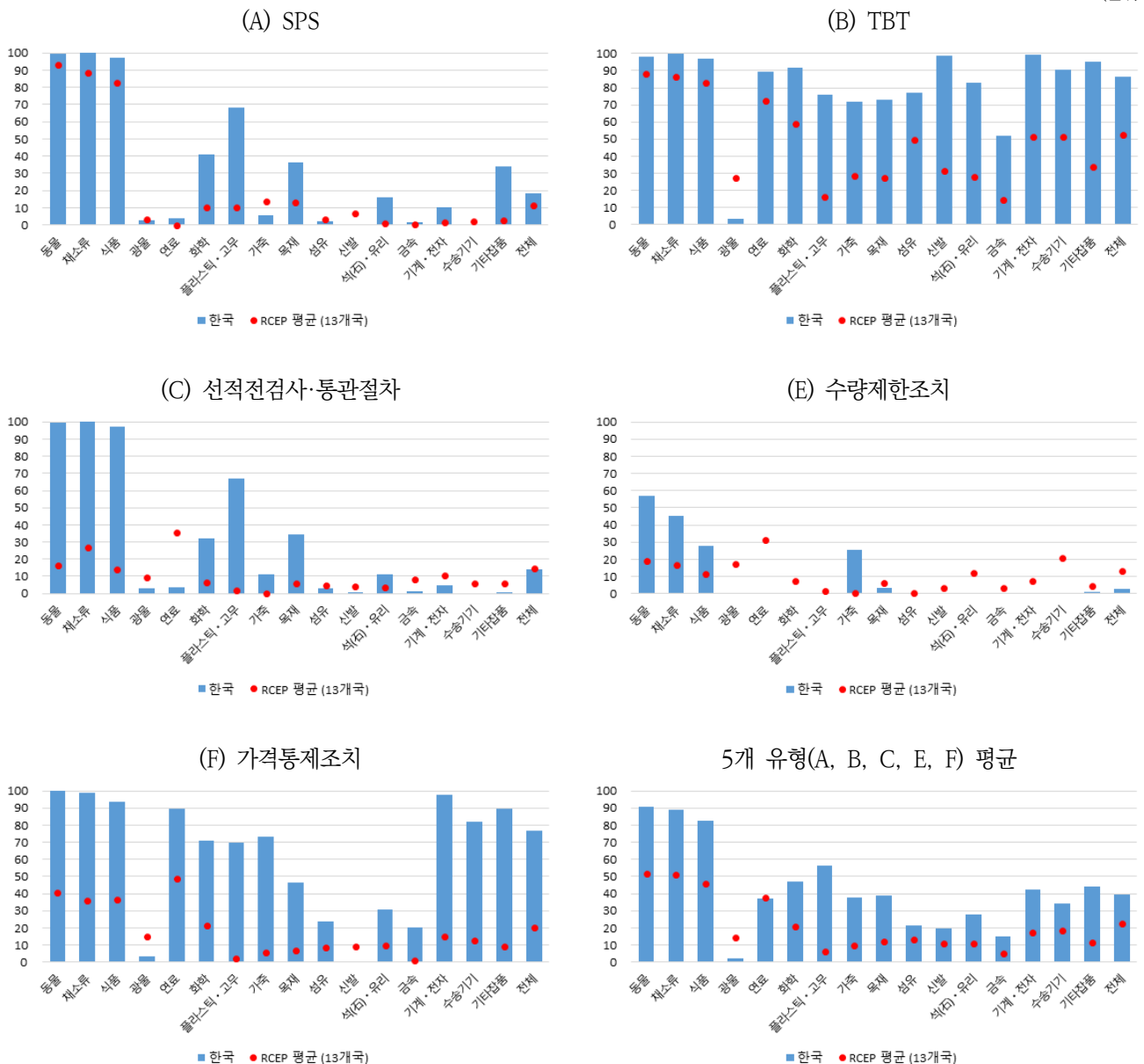
■ 한국은 총 80개 분야(16개 품목군, 5개 비관세조치 유형의 순서쌍) 중 52개 분야에서 범위비율이 RCEP 평균을 상회하고, 특히 유형별로는 TBT와 가격통제조치, 품목군별로는 농산물, 플라스틱·고무, 기계·전자 등에서 크게 높음.

- [SPS] 한국은 농산물(동물, 채소류, 식품) 3개 품목군에서 모두 100%에 가까운 범위비율을 보였으며, 공산품에 속하는 화학, 플라스틱·고무, 목재 등에서도 RCEP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BT] 한국은 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에서 범위비율이 RCEP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플라스틱·고무, 금속 등 다른 국가들의 범위비율이 낮은 품목군에서도 한국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적전검사·통관절차] 한국은 농산물, 화학, 플라스틱·고무, 목재에 대해 RCEP 평균보다 높은 반면, 연료에 대해서는 크게 낮았으며, 이 외에는 대체로 RCEP 평균보다 소폭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수량제한조치] 농산물과 가죽 분야에서만 한국의 범위비율이 RCEP 평균보다 높고, 이 외에 품목군에서는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
- [가격통제조치] 한국은 광물과 신발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에서 RCEP 평균 대비 높은 범위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농산물, 연료, 기계·전자 등에서는 한국의 범위비율이 90% 내외 수준으로 매우 높음.

그림 3. 한국의 품목군별 비관세조치 범위비율

(단위: %)



자료: WITS, <http://wits.worldbank.org/> (검색일: 2019. 12.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종합하면 한국의 TBT 범위비율은 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15개)에서 RCEP 평균보다 높고, 가격통제조치 범위비율은 광물과 신발을 제외한 14개 품목군에서 RCEP 평균보다 높음.

- 수량제한조치는 4개 품목군(농산물, 가죽)에 대해서만 한국이 RCEP 평균보다 높았고, SPS는 11개, 선적전검사·통관절차는 8개 품목군에서 한국이 RCEP 평균을 상회함.
-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농산물에 대해 5가지 비관세조치 유형 모두 RCEP 평균보다 높고, 또한 화학, 플라스틱·고무, 목재, 석·유리 등에 대해서는 수량제한조치를 제외한 4가지 유형이 RCEP 평균보다 높음.

■ 한국과 13개 RCEP 참여국 각각의 품목군별·유형별 범위비율을 비교해보면⁵⁾ 한국은 광물(품목군)과 수량제한조치(유형)를 제외한 여러 분야에 대해 비관세조치가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도국(동남아 국가) 및 선진국(일본) 모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농산물(동물, 채소류, 식품)]** 한국은 SPS, TBT, 선적전검사·통관절차, 가격통제조치 4가지 유형 모두 거의 100%에 가까운 범위비율을 보이면서 사실상 모든 농산물 수입에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취하고 있음.
 - 수량제한조치의 경우 미얀마, 필리핀 등과 함께 한국이 비교적 높은 범위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다른 품목군에서는 수량제한조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광물]** 다른 품목군들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범위비율이 모든 비관세조치 유형에 대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임.
 - 필리핀은 TBT, 선적전검사·통관절차, 수량제한조치, 가격통제조치 모두 범위비율이 100%에 가깝고, 이 외에 미얀마, 태국 등이 일부 비관세조치 유형에 국한해 높으며, 여타 국가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연료]** 한국은 TBT와 가격통제조치에 대해서만 범위비율이 약 90% 수준으로 높고, 다른 유형에서는 매우 낮음.
 - TBT는 대부분의 RCEP 국가에서 높은 범위비율을 보이는 반면, 다른 유형의 비관세조치들은 시행 여부 자체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범위비율이 높은 편임.
 - 연료에 대한 비관세조치 영향이 가장 큰 국가는 필리핀과 싱가포르로, 이 국가들은 SPS를 제외한 4가지 유형의 비관세조치가 모두 90% 이상의 범위비율을 보임.
- **[화학]** 한국은 수량제한조치를 제외한 4가지 비관세조치 유형의 범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다른 국가들은 TBT에 대해 공통적으로 높은 범위비율을 보인 반면, 다른 비관세조치 유형에 대해서는 뉴질랜드(SPS), 일본(선적전검사·통관절차, 가격통제조치), 필리핀(SPS, 수량제한조치) 등 일부 국가들의 범위비율이 두드러짐.
- **[플라스틱·고무]** 대부분 국가들에서 범위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선적전검사·통관절차와 가격통제조치에 대해서는 한국만 높은 것이 특징임.
 - 플라스틱·고무에 대한 범위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태국(SPS), 필리핀(TBT), 일본(SPS, TBT) 등이 있으며, 여타 다른 국가들의 경우 비관세조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가죽]** 한국은 TBT와 가격통제조치에 대한 범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또한 선적전검사·통관절차, 수량제한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일부분 비관세조치 영향이 존재함.

5) RCEP 참여국 각각의 품목군별·유형별 범위비율은 지면 관계상 본문에 수록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WITS 웹사이트(<https://wits.worldbank.org/>)에서 'Non-Tariff Measures' 항목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동 항목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는 한국의 범위비율은 비관세조치 원자료를 활용하여 WITS 자료와 동일하게 다음의 기준하에서 직접 계산함. ① 2014~18 한국의 국가별 수입액 자료(WITS)로 가중 ② 범위비율이 95%를 초과하는 비관세조치 세부유형 제외 ③ 특정 세번(HS 10단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partially covered) 품목 제외.

- 가축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만 특징적으로 비관세조치가 나타나는 편으로, SPS는 인도네시아, TBT는 필리핀·호주·뉴질랜드, 가격통제조치는 말레이시아에서 높은 범위비율을 보임.
- **[목재]** 한국은 TBT와 가격통제조치에 대한 범위비율이 높고, SPS와 선적전검사·통관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낮으나, 다른 RCEP 참여국들과 비교하면 수량제한조치를 제외한 4가지 비관세조치의 범위비율이 높은 편임.
- 필리핀은 SPS, TBT, 선적전검사·통관절차, 수량제한조치 4가지 모두 범위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 외에 SPS는 베트남, TBT는 캄보디아와 호주가 높음.
- **[섬유, 신발]** 한국은 TBT 위주의 비관세조치가 나타나는데, 섬유의 범위비율은 약 80% 수준으로 다른 국가보다 소폭 낮고, 신발은 100%에 가까운 수치로 상대적으로 높음.
- 다른 국가들도 TBT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선적전검사·통관절차(섬유, 신발), 일본은 수량제한조치(신발), 캄보디아는 가격통제조치(신발) 등에서 비관세조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석(石)·유리]** 한국은 TBT의 범위비율이 80% 이상으로 RCEP 참여국 중 가장 높고, 이 외에 SPS는 약 15%, 가격통제조치는 약 30%로 높지는 않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두드러짐.
- 캄보디아가 TBT, 수량제한조치, 가격통제조치 모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태국과 필리핀도 TBT와 수량제한조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금속]** 한국의 범위비율은 TBT가 약 50%, 가격통제조치가 약 20%에 불과하나, RCEP 참여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 외에 다른 비관세조치 유형에서는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임.
-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이 TBT와 선적전검사·통관절차에 대해 비관세조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외에 국가들은 사실상 0%에 가까운 범위비율을 보이고 있음.
- **[기계·전자]** 한국은 TBT와 가격통제조치에서 100%에 가까운 범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비관세조치 유형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 TBT와 가격통제조치에 대해 호주,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범위비율이 90% 내외로 높은 것이 특징이며, 또한 필리핀(TBT, 선적전검사·통관절차, 수량제한조치), 인도네시아(TBT, 통관절차), 캄보디아(TBT) 등도 비교적 높은 편임.
- **[수송기기, 기타잡품]** 한국의 TBT 범위비율은 선진국들과 함께 높은 수준이며, 특히 가격통제조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크게 높은 수치를 보임.
- 전반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들과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TBT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송기기에 한해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이 높은 수준으로 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4. 요약 및 시사점

■ 비관세조치는 지난 십수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오면서 최근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의 통상정책 도구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양자간 FTA 확대 및 EU, ASEAN 등 역내 경제통합 강화로 특혜관세를 통해 실질적인 관세율이 더욱 낮아지면서, 국가들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관세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
- 실제로 1995년 WTO 출범 이후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0.1%에서 2016년 6.4%로 연이어 감소 추세를 보여온 반면, 비관세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145건에서 3,045건으로 점차 증가해왔음.⁶⁾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확산을 통한 국가간 생산단계 공유는 기존 분업체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특히 중간재와 관련된 국내산업 보호 수단의 필요성을 증가시킴.
- 보건, 환경, 안전 등 소비자 및 공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 규제나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요구가 통상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함.

■ UNCTAD의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는 각국의 비관세조치를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체계하에서 정량화시키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됨.

- 비관세조치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 통상규범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정성적 특성상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임.
- 각 국가의 국내법에 근거한 비관세조치를 일률적인 기준하에 일관성 있게 수집·분류하는 것, 그리고 관세처럼 수치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로 정량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관세조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는 각국의 국내 법령상 존재하는 정성적 내용을 일원화된 분류체계와 수집 방법론하에서 정량적인 자료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적 논의 및 여러 방면의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음.

■ UNCTAD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총 1,930건으로, 세번(tariff line) 기준 11,483개 품목(93.8%)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상기술장벽(TBT) 비중이 36.6%와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수출관련조치(15.9%)와 가격통제조치(3.7%)를 제외하면 다른 유형들의 비중은 미미한 편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품목들이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품목이 여러 건의 조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6) 단순평균 실행관세율(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 11. 20);

비관세조치 건수(wiiw NTM Data, <https://wiiw.ac.at/wiiw-ntm-data-ds-2.html> (검색일: 2019. 1. 29), 원자료: WTO I-TIP.

■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은 다른 13개 RCEP 참여국과 비교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비관세조치 유형별로는 TBT와 가격통제조치, 품목군별로는 농산물, 플라스틱·고무, 기계·전자 등에서 크게 높음.

- 타 RCEP 참여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 수준은 TBT의 경우 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15개)에서, 가격통제조치의 경우 광물, 신발을 제외한 14개 품목군에서 RCEP 평균보다 높고, 반면 수량제한조치는 4개 품목군(농산물, 가죽)에 대해서만 한국이 높음.
- 한국은 광물(품목군)과 수량제한조치(비관세조치 유형)를 제외하고, 비관세조치가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도국(동남아 국가) 및 선진국(일본) 모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향후 국내적으로는 국내적 규제와 관련된 비관세조치 연구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으로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면서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

- 비관세조치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적 규제(behind the border measure)들은 보건, 동식물 및 환경 보호, 안전, 품질기준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무역을 보호하는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음.
- 국내적 규제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서의 부정적 영향과 식품 안전 기준, 유해물질 잔류 기준, 유아용품 안전성 검사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 구축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국가간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간 정량적 수치를 비교할 시에는 각국의 법·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부록. 비관세조치 건수 집계와 한계점과 범위비율 계산 방법

■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 내용 혹은 구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여러 건의 조치가 집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순히 건수를 집계하는 것만으로는 비관세조치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품목(HS코드)들이 비관세조치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를 측정 지표로 활용함.

- 가장 대표적인 측정 지표로는 2장에서 제시한 ‘대상 품목 비중’이 있으며, 소위 빈도지수(frequency ratio)라 일컬어짐.
 - 예를 들어 총 4개의 품목 가운데 1개 품목에 비관세조치가 존재한다면 그 대상 품목 비중(빈도지수)은 25%가 됨.
- 나아가 이를 실제 교역액으로 가중하면 실제 교역에 비관세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이것이 범위비율(coverage ratio)이 됨.
 - 위와 동일한 예시에서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는 1개 품목의 수입액이 전체(4개 품목)의 90%를 차지한다면 범위비율은 90%가 됨.
- 범위비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품목군 내의 전체 수입에서 비관세조치가 미치는 영향 정도 의미함.

$$[\text{식 1}] \text{ Coverage Ratio} = \left(\frac{\sum D_i V_i}{\sum V_i} \right)$$

D_i : i 품목에 대해 비관세조치가 존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V_i i 품목의 수입액

참고문헌

[국문자료]

조문희, 김종덕, 박혜리, 정민철. 2017.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7-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UNCTAD. 2013.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February 2012 Version. UNCTAD/DITC/TAB/2012/2.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PUBLICATION.

UNCTAD. 2014. Guidelines to Collect Data on Official Non-Tariff Measures, UNCTAD/DITC/TAB/2014/4.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PUBLICATION.

[웹사이트]

UNCTAD TRAINS. The global database on Non-Tariff Measures. <https://trains.unctad.org/>(검색일: 2019. 12. 10).

WTO I-TIP Goods.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검색일: 2019. 12. 10).

WITS. <http://wits.worldbank.org/>(검색일: 2019. 12. 10).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9. 11. 20).

wiiw NTM Data. <https://wiiw.ac.at/wiiw-ntm-data-ds-2.html>(검색일: 2019. 1. 29).

[기타 자료]

UNCTAD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 작업 파일(NTMDataEntry_Korea).